

대법원 2004. 2. 27 선고 2004다10435 판결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]

재판경과

대법원 2004. 2. 27 선고 2004다10435 판결

서울지방법원 2003. 12. 30 선고 2003나27367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03. 5. 16 선고 2002가단38221 판결

전문

원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 ○○○

피고, 상고인 ○○○

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. 12. 30. 선고 2003나27367 판결

주문

상고장을 각하한다.

이유

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은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(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은 상고제기기간을

도과한 2004. 1. 27. 접수되었다)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, 제402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.

2004.2.27.

재판장 대법관 강신욱 선정자 목록

1. ○○○

2. ○○○

끝.